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168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윤지민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 달성군 D 공사를 수급받았는데, 원고 회사는 그 공사 중 가설사무실 부지조성 공사(현장사무실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2018. 3.경에, 토공 및 우오수 공사를 2018. 6. 1.경 각 하수급받아, 각 그 무렵부터 당해 공사를 하게 되었다(이하, 위 공사들을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토목 등의 건설공사 기술자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이전에도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2018. 3. 27.경부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그 직을 수행하다가 2019. 11. 1.경 퇴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현장의 가설사무실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원고 회사를 위해 일해 왔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토공 및 우오수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등의 준비작업에도 관여해 왔다. 이처럼 피고가 입사 이전부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피고가 그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사전의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9. 1. 31.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8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재구입이나 장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 대금 과다청구나 허위청구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자신의 친인척을 현장에 취직시켜 그 사람을 통하여 현장 일에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게 되어 서로 갈등관계에 있게 되면서, 2019. 11. 1.경 피고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2019. 1. 31.에 현장소장이던 피고에게 교부한 80,000,000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청업체(주식회사 C) 직원들이나 원고 회사의 현장 직원들에 대한 인사나 감사 표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다. 그런데 피고가 그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전액 착복하였다. 피고가 원인없이 이익을 취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회사에게 그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고 현장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C의 관계자와 접촉하고, 원고 회사를 주식회사 C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킨 다음, 입찰에 필요한 제반검토와 서류 작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초 약속하였던 수주의 대가로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5천만 원만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 합의한 결과 이를 80,0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2018. 1. 31.에 교부받은 돈은 그 합의금 80,000,000원이다.

3. 판단

원고 회사는 2018. 1. 31.에 피고에게 교부한 돈이 부당이득금이라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 회사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설명절을 앞두고 감사 인사 등으로 사용하라면서 교부한 돈인데 피고가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돈이 원고 회사 주장의 용도로 교부된 돈인 사실은 원고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이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 회사 주장처럼 설명절 인사 용도로 교부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 주장의 용도로 위 돈이 교부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 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수주에 일정부분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수주의 대가가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② 원청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현장 직원들에 대한 명절 인사용도까지 겸하여 교부된 돈이라면 그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의 갈등관계로 원고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도 특별히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으며(오히려 자재구입대금이나 장비대금의 과다청구나 허위청구만 문제 삼았다), 그 퇴직 이후로부터도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 ③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의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다.
- ④ 2018년 설날은 2. 16.로 80,000,000원이 교부된 날인 1. 31.로부터 보름이나 뒤이다. 그 돈이 설명절 인사용도로 교부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빨리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 ⑤ 원고 회사는 명절인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매 명절 무렵마다 수 천만원(적게는 17,000,000원에서 많게는 6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여러 현장에 배분해 왔을 뿐 따로 현금을 교부한 적은 없는데(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유독 2018년 설 명절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만 거액의 현금이 교부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